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7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조인철 · 박지혜 · 박희승
이정문 · 정준호 · 민형배
박균택 · 어기구 · 양부남
이정현 · 이해민 · 조계원
허 영 · 정진욱 · 박용갑
김 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